



제 418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음주운전 적발 회피를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68호)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13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취지	4
2.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8

I. 제안경위

1. 민형배의원안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나. 제안연월일 : 2024. 06. 10.

다. 회부연월일 : 2024. 06. 13.

2. 신영대의원안

가.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나. 제안연월일 : 2024. 06. 18.

다. 회부연월일 : 2024. 0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민형배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비판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당 연예인을 모방한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보완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2. 신영대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

용을 낳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148조의2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들은 운전자가 음주측정 직전에 술 또는 의약품등을 먹거나 사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단기간에 변동시킴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민형배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등을 먹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아니 된다.</u>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생략)	제148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 -----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호흡조사 개시 직전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음주 상태 측정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주취운전이란…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그 혈중알콜농도가 특정되어야만 주취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¹⁾²⁾고 하

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3% 이상³⁾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개정안들은 모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술타기 수법’과 같은 행위는 호흡측정을 하기 전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운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어렵게 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행위임에도 이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어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달리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방해행

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2) 판결 선고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기준이 0.03%으로 강화되었음.

3)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도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동법 규정에 대해 음주운전 방지와 그 규제는 절실한 공익상의 요청이고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 확보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⁴⁾.

2.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음주측정 방해행위의 종류 ②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시기의 한정 여부 ③ 법정형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별 차이점>

	음주측정방해 행위의 범위	행위 금지 시기 한정 여부	법정형
민형배의 원안	술·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	호흡조사 개시 직전 한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영대의 원안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	제한 없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첫째,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관한 사항임. 민형배의원안은 호흡조사 개시 직전에 술을 마시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을 먹거나

4)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사용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하고 있고, 신영대의원안은 행위의 시기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민형배의원안의 경우 음주 상태의 측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를 막는다는 입법 목적을 보다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술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의약품 등” 이라고 하면 “등”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봄.

민형배의원안은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이라고 하여 금지행위의 시기를 한정한 반면, 신영대의원안은 그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음주운전 후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술을 마시는 행위가 모두 음주운전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봄.

둘째, 법정형에 관한 사항임.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민형배의원안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신영대의원안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음을 참고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구분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벌금 이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측정불응	1년 ~ 5년 징역이나 500만원 ~ 2천만원의 벌금	1년 ~ 6년 징역이나 500만원 ~ 3천만원의 벌금
0.2% 이상	2년 ~ 5년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의 벌금	2년 ~ 6년 징역이나 1천만원 ~ 3천만원의 벌금
0.08 ~ 0.2%	1년 ~ 2년 징역이나 500만원 ~ 1천만원의 벌금	1년 ~ 5년 징역이나 500만원 ~ 2천만원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 밖에, 개정안과 같이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는 경우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처벌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반복적인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벌·행정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⁵⁾을 고려하여 자전거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하여도 동 처벌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0. (생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참고로, 경찰청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이나 약물을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처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